

벤처기업 재투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즉 시		
신청인	① 성 명			② 주민등록번호				
	③ 주 소 (전화번호:)							
과세연도				년	월	일부터		
				년	월	일까지		
양도주식	④ 법 인 명			⑤ 사업자등록번호				
	⑥ 대표자 성명			⑦ 생년월일				
	⑧ 본점소재지							
	⑨ 보 유 주 식			⑩ 양 도 주 식				
	⑪ 양 도 시 기			⑫ 양 도 가 액				
	⑬ 양수인			⑭ 양수인 주민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	
	⑮ 양수인과의 관계							
	⑯ 일련번호		⑰ 취득시기	⑱ 주식수		⑲ 취득가액		
	계							
재 투자 법인주식	⑳ 법 인 명			㉑ 사업자등록번호				
	㉒ 대표자 성명			㉓ 법인등록번호				
	㉔ 본점 소재지			㉕ 투자방식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6 조의8제1항제1호)		[] 가목 [] 나목 [] 다목 [] 라목		
	㉖ 취득 주식 수			㉗ 주식가액				
㉘ 주식과세이연금액 (㉔ 양도가액 - ㉑ 취득가액 합계, ㉗ 한도)								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
			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		
신청인								
세무서장 귀하								
첨부서류	1.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 2. 재투자 확인서(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) 1부 3. 정관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.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서 사본 1부 5.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(3)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합니다.						수수료 없 음	

재투자 확인서

출자자 (투자자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 (전화번호:)			

제 출 처	[] 원천징수 의무자 [] 납세자 조합	법인명(상호)			
		대표자(성명)			
		소재지(주소)			
	[] 세무서장	주소지관할서		세무서장	
투자조합관리자 등		법인명(상호)	(전화번호:)		

출자(투자)금액 명세						
출자(투자)내역				벤처기업 등 투자내역		
① 출자일 (투자일)	투자조합(위탁회사)		④ 출자금액	⑤ 투자일	⑥ 투자 기업명	⑦ 투자금액
	② 조합명 (위탁회사명)	③ 출자총액				
계				계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유의사항

- 1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.
- 2. ⑤ ~ ⑦란은 개인투자조합·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적습니다.

재투자 확인서

출자자 (투자자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 (전화번호:)			

제 출 처	[] 원천징수 의무자 [] 납세자 조합	법인명(상호)			
		대표자(성명)			
		소재지(주소)			
	[] 세무서장	주소지관할서		세무서장	
투자조합관리자 등		법인명(상호)	(전화번호:)		

출자(투자)금액 명세						
출자(투자)내역				벤처기업 등 투자내역		
① 출자일 (투자일)	투자조합(위탁회사)		④ 출자금액	⑤ 투자일	⑥ 투자 기업명	⑦ 투자금액
	② 조합명 (위탁회사명)	③ 출자총액				
계				계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유의사항

- 1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.
- 2. ⑤ ~ ⑦란은 개인투자조합·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적습니다.